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

(안 제6조제2항 신설)

나.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

(별지 제1호서식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
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건강진단의 실시)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와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또는 의원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	제6조(건강진단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<u>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.</u>

건강진단 결과서

접수일시		발급번호			
건강진단을 받은 사람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진단항목	검사일자	판정일자	검사결과	최종판정결과	유효기간
매독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	☐ 적합 ☐ 부적합	0000-00-00
HIV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		0000-00-00
임질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0000-00-00
클라미디아감염증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
성기단순포진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
침규곤딜롬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
연성하감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
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	0000-00-00	0000-00-00	☐ 음성 ☐ 양성 ☐ 판정불가(미결정) ☐ 미검		
비 고(의사소견 등)					
판정자 면허번호		의사	(서명 또는 인)		

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00시 · 군 · 구 보건소(의료기관) 장 직인

유의사항

1. 최종판정결과가 적합한 경우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
2.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. (예시: 123456-2XXXXXX)
3.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,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/6개월 날짜를 표시합니다.

< 입법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331